

의안번호	제 373호
의결 연월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4월 일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3
----------	-----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일

발 의 자 : 황규철·이양섭·김학철·김인수·

박우양·이의영·김봉희 의원(7인)

1. 제안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안 제3조)
-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축산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2016.3.11.~2016.3.31.(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

전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지원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체험학습장, 전문사육시설 등의 조성 및 인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용·약용·사료용·학습·애완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2. 기능성 물질의 탐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인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농촌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산업화 육성 등), 제8조(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및 제10조(관련단체의 육성) 근거로 필요한 비용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참고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사육시설 지원, 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교육비 지원, 곤충단체 육성 등
- 나. 추계의 전제 : 사육시설 지원(1개소×3억원×3년), 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1개소×20억원), 교육비(1개소×20백만원×5년), 단체 육성(1개소×20만원×5년)
- 다. 추 계 결 과 : 17년~21년까지 총3,100백만원(도비500백만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가공 및 유통시설, 교육비(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사육시설 지원(국비50%, 도비15%, 시군비25%, 자부담10%), 단체 육성(도비 50%, 시군비 50%)

마. 지원계획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사육시설 지원	1개소	1개소	1개소		
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1개소		
교육비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단체 육성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출	3,100	340	2,340	340	40	40
사육시설지원 등	3,100	340	2,340	340	40	40

6. 작성자 : 농정국 축산과장 곽학구(☎ 220-3710)

□ 사업별 비용투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계	3,100,000	340,000	340,000	2,340,000	40,000	40,000
	국비	1,500,000	160,000	160,000	1,160,000	10,000	10,000
	도비	500,000	58,000	58,000	358,000	13,000	13,000
	시군비	920,000	62,000	62,000	762,000	17,000	17,000
	자담	180,000	60,000	60,000	60,000	0	0
산업화 육성 (생산연구)	계	900,000	300,000	300,000	300,000	-	-
	국비 (50%)	450,000	150,000	150,000	150,000	-	-
	도비 (15%)	135,000	45,000	45,000	45,000	-	-
	시군비 (15%)	135,000	45,000	45,000	45,000	-	-
	자담 (20%)	180,000	60,000	60,000	60,000	-	-
산업화 육성 (가공유통)	계	2,000,000	-	-	2,000,000	-	-
	국비 (50%)	1,000,000	-	-	1,000,000	-	-
	도비 (15%)	300,000	-	-	300,000	-	-
	시군비 (35%)	700,000	-	-	700,000	-	-
	자담	-	-	-	-	-	-
전문 인력양성 (교육)	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국비 (50%)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비 (15%)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시군비 (35%)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자담	-	-	-	-	-	-
단체 육성 (컨설팅 및 행사지원)	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국비	-	-	-	-	-	-
	도비 (50%)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군비 (50%)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담	-	-	-	-	-	-